

#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1
----------	-----

2022년 9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 상정일자 :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9월 2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 1. 제안이유

- 서남권글로벌센터는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을 위한 다국어 상담·정보제공·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로,
-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시

##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40
- 시설규모 : 연면적 934.74m<sup>2</sup> (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 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등
- 인력운영 : 12명 (센터장 1명, 팀장 3명, 직원 8명)

####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23.1.1.~2025.12.31.)
  - 위탁업무
    - 서남권글로벌센터 관리 · 운영 및 사업 일체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보 다국어 번역 및 제공
      - 외국인주민 생활상담 및 법률·노무 등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정착지원 사업 수행(한국어교실, 미디어교육 등)
  - 소요예산 : 950,782천원(2022년)
    - 산출근거 : 인건비 557,711천원, 운영비 97,771천원, 사업비 295,3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적정('22.8.8.)

## 다.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다국어 상담, 언어별 신속한 정보제공, 맞춤형 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업무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외국인주민의 서울생활을 지원하는 특화시설로 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및 제18조

#### 제7조(지원의 범위)

-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6., 2021.7.20.>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 운영 등)**

-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제20조(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

- 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1.5, 2021.7.20>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재위탁)\_보완

### III.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 1 동의안 제출 경위

- 본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오던 ‘서남권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가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 제2항<sup>1)</sup>의 단서 조항(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지속할 것인지(재위탁<sup>2)</sup>)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서남권글로벌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보 다국어 번역 및 제공, 외국인주민 대상 노무·법률·생활 등 상담 서비스, 외국인주민의 교육·문화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임.

#### 2 민간위탁 운영 개요

- ‘서남권글로벌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sup>3)</sup>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외국인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2021.12.30>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30., 2014. 5. 14., 2021.3.25>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시설의 하나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sup>4)</sup>와 상기의 동 조례 제7조<sup>5)</sup>에 따라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지원함.

- 동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은 순수 시비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특별시 외국인지원시설 가운데 '서남권글로벌센터'는 기존의 '영등포글로벌빌리지센터'와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를 통합하여 2014년에 개관한 것으로 외국인주민을 위한 종합서비스센터 기능을 수행함.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으로 서남권글로벌센터와 서울글로벌센터 2개를 운영 중이었으나, '21.12.31일자로 서울글로벌센터가 여성가족정책실(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경제정책실(금융투자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서남권글로벌센터가 외국인주민 거점시설로 기능

- 
- 3)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 4)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5)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8, 2019.9.26, 2021.7.20>
    -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 3.~11.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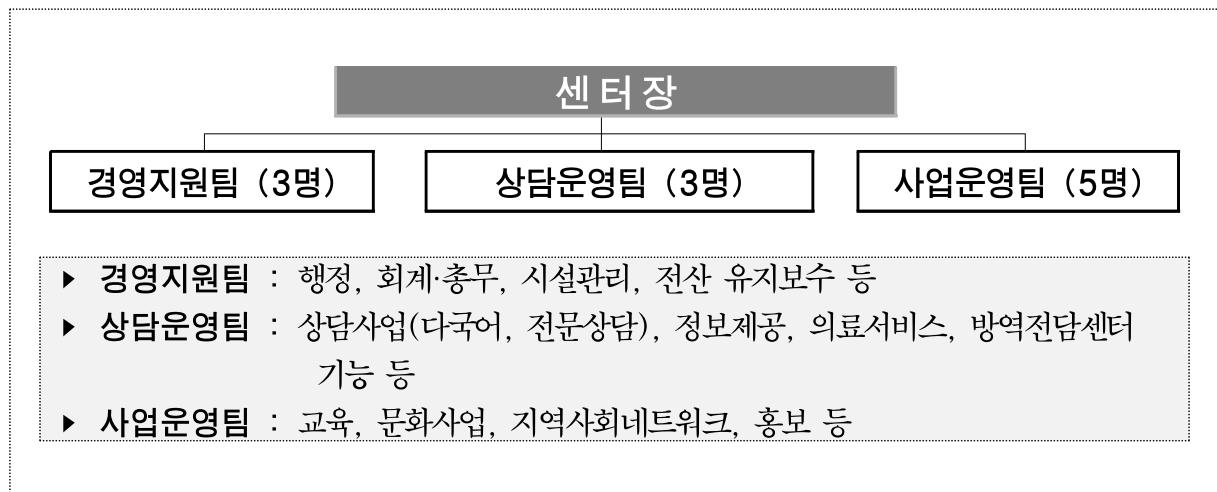
및 역할이 강화되었음.

### <표1. 글로벌센터 역할 변화>

구분	위치	조직개편전	조직개편후
서남권글로벌센터	영등포구 도신로 40	서남권지역 중국동포 지원 거점 시설	외국인주민 대상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시설
서울글로벌센터	종로구 종로 38 (서린동)	외국인주민 대상 종합서비스 제공 시설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전담 지원 시설

- 2022년 현재, 센터의 기능 및 역할 강화에 따른 조직도와 주요 개선사항은 아래 <그림1>과 <그림2>와 같음.

### <그림1. 서남권글로벌센터 조직도>



## <그림2. 서남권글로벌센터 주요 개선사항>

구 분	현 재(2021)	개 선(안) (2022)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 팀 9명</li> <li>※ 다국어상담 등 단기시간제 8, 별정직1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팀 12명</li> <li>※ 경영지원(3), 상담운영(3), 사업지원 (5)</li> </ul>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남권 지역 중국동포 중점 지원</li> <li>· 동포체류지원센터 ('21.7~'23.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li> <li>· 다국어상담 및 번역서비스 지원</li> </ul>
상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개 언어 제공</li> <li>· 중국어 상담 상시 제공</li> <li>· 전문상담(변호사 3일, 노무사 2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개 언어 제공 (<a href="#">영어 추가</a>)</li> <li>· 중국어 상담 상시 제공</li> <li>· 전문상담(변호사 3일, 노무사 2일)</li> </ul>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거점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주민 생활정보 제공</li> <li>· 홈페이지, SNS 관리 및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주민지원 통합포털 운영</li> <li>·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li> <li>· 체류민원센터 운영(1층, 92㎡/3월~)</li> </ul>
교육 및 문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한국어 운영</li> <li>· 컴퓨터 교실 운영</li> <li>· 이주민 참정권교육(비상설)</li> <li>· 문화동반자교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활용 교육 신설 (신규)</li> <li>· 문화동반자교실 분야 다양화 (추가)</li> <li>· 생활한국어 / 컴퓨터 교실 운영</li> <li>· 외국인주민 참정권 교육</li> </ul>
코로나 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지원 기능(치과, 양방, 한방)</li> <li>· 방역전담센터 기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지원 기능(치과, 양방, 한방)</li> <li>· 방역전담센터 기능 유지</li> </ul>
내외국인 교류사업 (거점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남권 정책토론회(다가치포럼)</li> <li>· 외국인주민공동체 활성화</li> <li>· 내·외국인주민 교류 행사 주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남권 정책토론회(다가치포럼)</li> <li>· 외국인주민공동체 활성화</li> <li>· 내·외국인주민 교류 행사 주최</li> </ul>

- 서남권글로벌센터는 서울특별시 소유 건물에서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에게 다양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시설로서 시설형 위탁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sup>6)</sup>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조례」 제11조<sup>7)</sup>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동 제4조의3제2항 단서 조항<sup>8)</sup>에 따라 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표2. 민간위탁 추진현황>

차수	위탁기간	위탁법인	위탁방법
1차	‘15.6.1.~‘16.12.31.(1년6개월)	(사)세계선린회	협약변경
2차	‘17.1.1.~‘19.12.31.(3년)	(사)이주민센터친구	재위탁(공모)
3차	‘20.1.1.~‘22.12.31.(3년)	(사)이주민센터친구	재계약

- 한편 2022년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같은 시기 평가를 받은 전체 35개 사무의 평균 77.84점에 비해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연계활동과 코로나19 대응조치 등의 성과로 상대적으로 높은 79.53점을 받았으나,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높은 영등포구 지역 특성상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개선과제로 나타남.<sup>9)</sup>

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협약체결 등)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0.7.16>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2021.12.30>

9) 서울특별시(2022.6),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과 -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외국인 생활지원사업 운영”;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22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제2차) 결과보고, 서울시정보소통광장(2022.07.19.)

## <2022년 종합성과평가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서울거주 외국인 건강증진을 위한 특화사업 확대 조치, 재난긴급생활비 안내 및 신청접수,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연계활동, 외국인주민 대상 방역 정보 제공 등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우수</li><li>- 부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급여 산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사후관리까지 청진 결과 많은 인원이 임금 수령의 성과 거둠</li></ul>
개선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외국인노동자센터(6개소)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 외국인 생활상담 등 유사사업이 있어 이와 차별화된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제시가 필요</li><li>-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조체계 구축하는 방안 필요</li></ul>

###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와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7조<sup>10)</sup>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sup>11)</sup>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sup>12)</sup>에 따

- 10)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1)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라 외국인주민의 생활지원과 권리보호 및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음.

- 「민간위탁조례」 제4조<sup>13)</sup>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 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외국인 주민 대상 노무, 법률, 생활 등 상담과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에 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남권글로벌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1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8, 2019.9.26, 2021.7.20>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8.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 등의 보호·지원
9.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10. 외국인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또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 제3항<sup>14)</sup>에서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4 종합 검토 의견

- 동 위탁 사무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에게 지역사회 생활 안정과 정착을 돋기 위한 상담, 교육, 의료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 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업무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이에 서남권글로벌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서울글로벌센터의 업무이관('21.12.) 및 동 센터 1층 일부 공간에 체류민원센터 개소('22.5.) 등 서남권글로벌센터에 기대되는 역할 변화에 맞춰 외국인 주민 대상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

14)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제목개정 2021.7.20]

시설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시설운영 및 사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는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71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남권글로벌센터는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을 위한 다국어 상담·정보제공·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로,
- 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40
- 시설규모 : 연면적  $934.74m^2$  (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 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등
- 인력운영 : 12명 (센터장 1명, 팀장 2명, 직원 9명)

###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23.1.1.~2025.12.31.)
- 위탁업무
  - 서남권글로벌센터 관리·운영 및 사업 일체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보 다국어 번역 및 제공

- 외국인주민 생활상담 및 법률·노무 등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정착지원 사업 수행(한국어교실, 미디어교육 등)
- 소요예산 : 950,782천원(2022년)
    - 신출근거 : 인건비 557,711천원, 운영비 97,771천원, 사업비 295,3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적정('22.8.8.)

#### 다.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다국어 상담, 언어별 신속한 정보제공, 맞춤형 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업무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외국인주민의 서울생활을 지원하는 특화시설로 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및 제18조

**제7조(지원의 범위)**

-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6., 2021.7.20.>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제20조(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

- 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1.5, 2021.7.20>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서남권글로벌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재위탁)\_보완

(외국인다문화담당관-24642, 2022.8.3.)

※ 작성자 : 가족다문화담당관 가족다문화정책팀 최수진 (☎ 2133-8685)